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7. 12., 박정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 7.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수정안반영 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하의원)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졌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22,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2024. 12. 10. 가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안반영 폐기